

## 2021 여행업계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여행사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기반 마련을 지원하고자 '여행업계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년 7월 8일

### 1 사업 개요

**가. 사업목적 :** 여행업계의 코로나 위기 극복, 환경변화 대응 및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관광분야 특화 디지털 전환 지원

**나.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상 여행업(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 등록 사업자(법인, 개인)이며, 창업 1년(20.7.8 이전 창업) 이상 중소기업

### 다. 과제수행기간

체험형	'21.8월~11월(4개월)	주도형	'21.8월~12월(5개월)
-----	-----------------	-----	-----------------

**라. 기업선발 : 80개 내외(1차 모집) \* 9월중 2차 모집 예정**

※ 모집규모는 기업 선정 평가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음

### 마. 지원사항 : 맞춤형 패키지 지원(컨설팅+자금+역량 교육)

- (컨설팅) 디지털 역량진단 기반 맞춤형 컨설팅(선정과제 구체화 및 전략수립 등)
  - (자금지원) 디지털 콘텐츠 및 기술을 활용한 과제수행 자금 지원(유형별 차등 지원)
  - (맞춤형 교육) 디지털 기초교육 + 선정과제 연계 기업 맞춤형 교육 지원
  - (인센티브) 기본과제 종료 후 성과평가에 따른 우수기업 추가 예산 지원
- ※ 우수기업 선발 및 자금 지원 규모는 9월 중 선정기업 대상 공지 예정  
 ※ 우수성과 기업대상 '21.12월 ~ '22.3월까지 인센티브 자금 지원 예정

### 바. 자금지원 : 지원 유형별(체험형/주도형) 차등 지원

유형 구분	지원금(최대)			기업 선발 예정 수
	기본과제*	디지털 솔루션**	소계	
① 체험형	15백만원	5백만원	20백만원	76개사
② 주도형	30백만원	5백만원	35백만원	12개사

※ 여행사의 코로나 위기 감안 기업 자부담금 없음. 단, 부가세액은 참여기업 부담

※ 자금지원 용도 : 외주용역비, 홍보비(홍보비는 기본과제 지원금의 50%한도 내) 지원

유형/구분	개념
체험형	디지털 활용 경험 미보유/부족 업체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통해 단기적·가시적 효과 창출이 가능한 디지털 전환 과제 발굴 및 수행 경험 제공
주도형	디지털 활용 경험을 보유한 업체 대상 자체 수립한 디지털 전환 계획을 바탕으로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젝트 수행 지원 ※ 지원 유형에는 제한 없음. 단, 체험형과 주도형 평가방법 상이
* 기본과제	선정과제(고객응대 시스템 구축 등) 개발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금 지원
** 디지털솔루션	클라우드 서비스, HW·NW·시스템SW 등 기업 ICT 인프라 도입 지원

**사. 지원방식** : 현금이 아닌, 수혜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제공기업(개인·법인) 자율 선정 또는 공사 제공 풀(Pool) 중 선정
- 단, 서비스 제공기업 자율 선정 시, 공사 서비스 제공기업 모집 공모를 통해 적격 확인된 기업에 한하여 과제 수행을 위한 계약체결 가능

## 2 신청 요건

### 가. 신청 자격

\* 아래 요건 모두 충족시 지원가능

- 공고일 기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 관광사업자등록증 상 「관광진흥법」 여행업종(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을 영위하는 기업(붙임 4 참조)
-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체
- 공고일(2021.7.8) 기준 창업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

### 나. 신청 제외대상

- 대기업·중견기업, 지자체·공공기관, 예비창업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휴·폐업 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 단, 사업신청일 전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 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 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 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은 지원 가능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대표자 또는 기업의 보조금법 위반 및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다음 중 하나에 속하는 기업 또는 창업자
  - \* 공고일 기준 해당사항 없더라도 연내 1개 이상 선정 시 중복수혜 불가능
  - 2021년 제12회 관광벤처사업(예비·초기·성장) 선정기업
  - 2021년 관광 액셀러레이팅 선정기업
  - 2020~2021년 관광 플러스팁스 선정기업
  - 2021년 관광 글로벌 선도기업 선정기업
  - 2021년 중기부 창업패키지 선정기업(예비·초기·도약 등) 등
  -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선정기업
    - 2020년 관광기업 혁신바우처의 대형바우처 수혜기업
    - 2021년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선정 기업(선정 바우처 종류 무관)

### 3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신청 기간 : 2021.7.8(목) ~ 7.22(목)

나. 신청 방법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dtrans@knto.or.kr](mailto:dtrans@knto.or.kr)) \*관련서류 zip파일로 제출
- (유형별 신청) 체험형, 주도형
  - \*체험형, 주도형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선발 및 지원은 1개 유형에 한함.

다. 제출서류

- 디지털 역량진단 1부
- 사업 신청서 1부, 사업수행계획서 1부
- 중소기업 확인서 1부, 관광사업자등록증 1부, 사업자등록증명 1부
- 채무불이행 여부 확인서 1부, 납세증명원 1부
- 사업 유의사항 확인 및 동의서 1부
- 기업(신용)/개인(신용) 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1부
- 지원금 반납 서약서 1부

※ 신청기업의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탈락 등 불이익에 대해 공사가 일체 책임지지 않으므로, 공고문을 꼼꼼하게 읽고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라. 대상기업 선정

- 각 분야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 소정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
  - (평가항목) 사업추진 적합성, 추진 역량/잠재력, 기대효과
  - (평가방법) 평가항목별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를 합산, 평점 60점 이상 기업 중 상위 기업 선정

·(체험형) 서류심사

·(주도형) 1차) 서류심사(최종선발 기업 수의 1.5배수), 2차) 발표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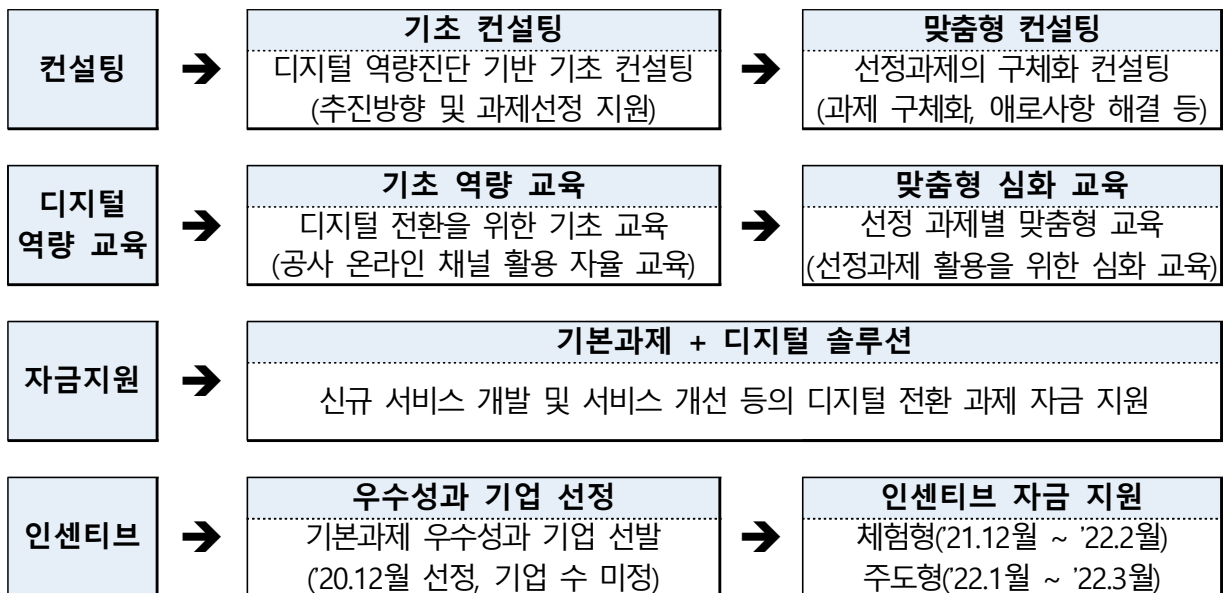
※ 주도형 발표 심사는 기업 대표자(신청자) 직접 발표(직원 발표 시 추후 기업소속 증명 가능한 서류 제출 필수), 불참 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업체발표 10분, 질의응답 5분)

## 마. 진행일정

신청·접수	→	심사 (서류심사)	→	심사 (발표심사)	→	선정기업 발표	→	협약/계약체결 과제 수행
7.8~7.22		7.26~7.27		7.29		8.2		8.3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음

## 사. 선정기업 지원 프로세스



아. 사업문의 : 한국관광공사 관광산업전략팀(033-738-3615)

- 붙임 : 1. 유의사항  
2. 제출서류 목록  
3. 관광진흥법 및 중소기업기본법  
4. 여행업계 디지털전환 지원 분야 및 프로그램
- 별첨 : 제출 서식. 끝.

## 붙임1

## 유의사항

### □ 사업 참여 신청 시 유의사항

- ▶ 법인 사업자의 경우 본점만 신청 가능. 지점, 지사, 부설 연구소 등은 참여 불가
- ▶ 수기 작성·제출된 최종 사업계획서는 서류 평가에서 제외 ※필히 공지 양식 기준 준수
- ▶ 사업계획서상의 모든 항목은 평가점수에 반영되며, 작성항목 중 미작성·오류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평가결과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 사업계획서를 대필하여 제출하였을 경우, 신청자 및 작성자 등 관련자 전원에게 해 사기 또는 업무 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음
- ▶ 동 사업에 지원·참여하는 자는 채무불이행 여부 등 신용조회 동의를 전제함
- ▶ 사업 참여 신청자는 모집요강 및 붙임의 ‘운영·관리 기준’을 사전 숙지하여 신청

### □ 심사 제외 대상

- ▶ 모집공고문 2.신청요건 나.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기업
- ▶ 제출서류 양식을 준수하지 않거나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 지원 유형과 다른 사업계획서 양식으로 신청하는 경우  
 (예시 : 체험형 사업계획서 양식으로 주도형 부문에 신청하는 경우)
- ▶ 공사에서 추가 요구하는 제출서류를 기한 내 미제출하는 경우

### □ 선정 및 협약체결 이후 유의사항

-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평가대상 제외, 선정 이후라도 선정 취소, 지원사업 참여 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 정부지원금 유용 및 편취 등 사업계획과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적발되었을 경우, 협약취소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 될 수 있음
- ▶ 사업 종료 후 성과평가 결과의 기준 미충족 기업의 경우 참여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음

### □ 기타 안내사항

-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여행업계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 운영·관리 기준’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
- ▶ 본 사업 선정자는 각 유형별로 선정과제 수행을 완료하여야 하며, 미수행으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 부정행위 신고 센터([dtrans@knto.or.kr](mailto:dtrans@knto.or.kr)), 각 수행 주체의 부정행위 발견시 신고 요망

**붙임2**

**제출서류 목록**

① 지원사업 신청서(서명 스캔본)

- 체험형, 주도형 2개 유형 중복 신청 가능 (심사 결과에 1개 유형만 유효)
- 중복 신청하는 경우, 신청하는 유형 신청서를 각각 작성 후 제출, 지원 규모에 맞는 계획서를 각각 작성하여야 함

\* 유형별 사업계획 대비 지원예산 규모의 적정성 여부(지원예산 대비 사업계획의 과다/과소 여부)를 평가 반영 예정임

☞ 양식에 맞춰 작성 및 서명 후 스캔본 파일 제출 [별지서식 1] 참조

② 사업수행계획서(원본 및 서명 스캔본)

- 체험형 : [별지서식 2] 활용 작성
- 주도형 : [별첨 PPT양식] 활용 작성, 회사소개서 첨부

☞ 양식에 맞춰 작성 후 원본파일 제출 [별지서식 2], [별첨 PPT 양식]

③ 중소기업 확인서(스캔본)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http://sminfo.mss.go.kr>)

④ 사업자등록증명서(스캔본)

☞ 사업자등록증명 (국세청 및 정부24 발급)

※ 여행업 업종 정의 : 붙임3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체 유형 참조

⑤ 관광사업자등록증(스캔본)

☞ 관광사업자등록증

⑥ 채무불이행 여부 확인서(스캔본)

☞ 신용평가사 발급

⑦ 납세증명원(스캔본) 각 1부

- 법인의 경우 법인의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개인사업자이면서 공동 대표인 경우) 공동대표 모두의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개인사업자이면서 각자 대표인 경우) 신청하는 대표(1인)의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홈택스 및 정부24 발급

⑧ 사업 유의사항 확인 및 동의서 각 1부(서명 스캔본)

☞ 양식에 맞춰 작성 후 스캔파일 제출 [별지서식 3] 참조

⑨ 기업 및 개인 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서명 스캔본)

- 개인 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는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별 작성 필요

※ 사업 참여 인력 미확정인 경우(사업총괄책임자 동의서 제출), 선정 확정 후 참여인력  
동의서 제출 필수

☞ 양식에 맞춰 작성 후 스캔본 제출 [별지서식 4, 5]

⑩ 지원금 반납 서약서(서명 스캔본)

☞ 양식에 맞춰 작성 후 스캔파일 제출 [별지서식 6] 참조

⑪ 디지털 역량 진단(스캔본)

☞ 양식에 맞춰 작성 후 스캔파일 제출 [별지서식 7] 참조



## 붙임3

## 관광진흥법 및 중소기업기본법

### ○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여행업

####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행업 :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 1. 여행업의 종류

- 가. 일반여행업 :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사증(査證)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 나. 국외여행업 : 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사증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 다. 국내여행업 :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 상기 해당 업종에 대해서만 여행업계 디지털 전환 및 컨설팅 지원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따른 중소기업자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붙임4**

**여행업계 디지털전환 지원 분야 및 프로그램**

- 지원 분야 및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수행과제를 선정하여 사업계획서 제출
- 제출된 사업계획의 추진 목적과 프로그램 내역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하여 참여기업을 선발할 예정임

분야		프로그램(안)
고객	고객관리(CRM) 및 고객경험관리(CEM) 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객관계관리(CRM) 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li> <li>▶ 고객·여행상품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와 응대를 위한 클라우드 기반 고객경험관리(CEM) 솔루션 도입</li> </ul>
	고객 이해 확장을 위한 데이터 역량 기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부데이터(고객, 상품, 콘텐츠, PoI) 등 관리 체계 정비/구축</li> <li>▶ 소셜/OTA 리뷰 데이터 등 외부 데이터 수집 및 가공, 분석</li> <li>▶ 문화관광, 유통소비 등 데이터 구매비 지원 등</li> </ul>
상품	디지털 기술 요소 기반 스마트 관광 상품·콘텐츠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R/VR 실감형 관광 콘텐츠 기획 및 개발</li> <li>▶ 비대면 랜선여행 패키지 기획 및 개발</li> <li>▶ 기술(IoT/Beacon)을 활용한 관광객 관광상품 기획 및 개발</li> <li>▶ 구독형 여행 서비스 기획 및 개발 등</li> </ul>
	디지털 홍보 마케팅 콘텐츠 기획 및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튜브 및 틱톡 등 영상 플랫폼 송출용 홍보 마케팅 콘텐츠 기획 및 제작</li> <li>▶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홍보 마케팅 콘텐츠 기획 및 제작</li> <li>▶ 디지털 사이니지 등 공공 디지털 인프라를 활용한 홍보 마케팅 콘텐츠 기획 및 제작 등</li> </ul>
채널	자사 웹페이지 및 모바일앱, SNS 채널 등 구축 및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웹 기반 홈페이지 신규 구축 및 개편 (콘텐츠/디자인 개편, 반응형 웹으로의 전환 등)</li> <li>▶ 모바일앱 신규 개발 및 기능 고도화(예약/결제, 커뮤니티 기능 추가 등)</li> <li>▶ 스마트스토어, 라이브 커머스 등 신규 채널 확대 등</li> </ul>
	데이터 기반 디지털 온라인 마케팅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이럴 마케팅, 인플루언서 마케팅 등 디지털 채널 기반 마케팅</li> <li>▶ 디지털 매체 타겟 마케팅</li> <li>▶ 자사 홍보 마케팅 향상 및 비용 효율화를 위한 검색엔진최적화(SEO) 기반 온라인 마케팅 등</li> </ul>
기술 및 인프라	디지털 기술 및 인프라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챗봇 기반 실시간 고객 응대 시스템 구축</li> <li>▶ 기존 자사 보유 시스템 기반 ERP 시스템 및 DB의 클라우드 이전</li> <li>▶ 소셜 데이터 자동크롤링/수집기 개발 등</li> </ul>

<p>운영 및 프로세스</p>	<p>디지털 기반 업무 환경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영정보관리 디지털 대시보드 개발</li> <li>▶ 협업/화상회의/계약관리 등 비대면 업무 시스템 도입</li> <li>▶ 경영, 매출실적 등의 정보 및 프로세스의 업무 자동화 솔루션 도입 등</li> </ul>
<p>디지털 전략 및 리더십</p>	<p>디지털 전환 전략 마스터 플랜 수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영 전략과 연계한 디지털 전환 전략 수립</li> <li>▶ 디지털 기반 비즈니스 모델 구축</li> <li>※ 주도형만 참여 가능하며, 전략 수립 후 전략에 따른 수행과제 1개 이상 실행 필수</li> </ul>

※ 상기 프로그램은 수혜기업의 과제 발굴을 위한 대표적 예시이며, 해당 분야와 관계된 사업의 경우 수혜기업 선발 평가시 반영하여 심사 예정